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

보육료 무상화 신청 절차에 대하여

保育料が ただに なるための 手続きに ついて

유치원·고도모엔(교육 부문)이나 비인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나 연장 보육이용료의 무상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용 시설의 종류나 보육 필요성여부 등에 따라 절차나 무상화 상한액이 다릅니다.

인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희망하는 날짜의 전월 말일까지 절차를 완료해 주십시오

■ 대상자

1. 유치원·인정어린이집(교육 부문)의 보육료

· 대상: 2020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3세 이상의 유아(1호 인정아)

2. 유치원·인정어린이집의 연장 보육 이용료

- 보육이 필요한, 2020년 4월 2일~2023년 4월 1일에 태어난 유아(2호 인정아)
- 시민세 비과세 세대로 보육이 필요한, 2023년 4월 2일~2024년 4월 1일에 태어난 유아(3호 인정아)

3. 인가 외 보육 시설의 보육료

- 보육이 필요한 2020년 4월 2일~2023년 4월 1일에 태어난 유아(2호 인정아)
- 시민세 비과세 세대이며 보육이 필요한, 2023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3호 인정아)

■ 신청방법

인정 희망일※의 전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다니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원 등) 시설에서 안내 서류 (【1号認定の オンライン申請に ついて】 및 【子育てのための 施設等利用給付制度の 御案内 新制度幼稚園・認定こども園の 利用者向け】)을 받아, 기재된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인정 희망일이란,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료 무상화 대상이 되는 연령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

<https://www.city.suita.osaka.jp/kosodate/1018230/1018245/1018246/1021141.html>

■ 문의처

보육 유치원실(保育幼稚園室, Hoikuenyochiensichu) 06-6155-5486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